##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신청서

※ 3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해당하는 내용 앞의 [ ]에 √표를 합니다. (3쪽 중 1쪽)

| 신청인<br>(개인)            | 성명  |           | 주민등록    | 번호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(서명 또는 인) |        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| (시・도)     |         | (시・군・구)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※ 시・도, 시・군・구까지만 작성 (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)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상자와의 관계  |           | 연락처    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※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3쪽 유의사항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|
| 신청인<br>(법인)            | 기관명   |           | 사업자등록번호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자   |           | 연락처    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(서명 또는 인)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재지   | ,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방문자 성명  | 주민등록번호    |         | 연락처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|
| 열람 또는<br>등·초본<br>교부대상자 | ※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·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<br>하지 않습니다.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  |           | 주민등록번호 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|

☞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.

|  | 열람               | [ ]등본 사항   |  |  |  |
|--|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 | 포함 여             | 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·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>부를 선택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등 기본적인<br>제공됩니다.<br>[ ]등본 사항 전부 포함 [ ]초본 사항 전부 포함  |  |  |  |
| 신청내용   | 등본<br>교부         | 1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[ ]전체 포함 [ ]직접 입력: 최근_년 포함 2. 세대 구성 사유 [ ]포함 3. 세대 구성 일자 [ ]포함 4. 발생일 / 신고일 [ ]포함 5. 변동 사유 [ ]포함( □세대, □세대원)   |  |  |  |
|  | [ ] <b>\( \)</b> | 6.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・세대원・외국인등의 이름 [ ]포함 7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[ ]포함( □본인, □세대원) 8.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[ ]포함 9. 동거인 [ ]포함   |  |  |  |
|  | 초본<br>교부<br>[ ]통 | 1.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[ ]포함 2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[ ]전체 포함 [ ]직접 입력: 최근 년 포함 3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[ ]포함 4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[ ]포함 5.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[ ]포함 6. 발생일 / 신고일 [ ]포함 7. 변동 사유 [ ]포함 8. 병역 사항 [ ]포함(□기본(입영/전역일자),□전체) 9. 국내거소신고번호 / 외국인등록번호 [ ]포함 |  |  |  |
| 욠및쩎  |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증명자료   |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「주민등록법<br>합니다.   | 법 시행령 <u>.</u>   |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   |  |  |  |
| 년 월 일<br><b>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 및 출장소장</b>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담당 공무원 신청인이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<br>확인사항 면제 대상인지 여부 |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|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
신청인

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(서명 또는 인)

## 유의 사항

- 1.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「출입국관리법」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2. 본인·세대원이 본인·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"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"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가.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
  - 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
  - 다.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,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라.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- 마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된다)이 신청하는 경우
  - 바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)이 신청하는 경우
  - 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
  - 아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
  - 자. 「5・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・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)이 신청하는 경우
  - 차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 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)이 신청 하는 경우
  - 카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
  - 타.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
  - 파.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
- 4. 신청인은 "신청 내용"란의 각 항목에서 "포함"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5.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.
- 6. "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"을 "직접 입력"으로 선택하는 경우,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.
- 7.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"3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" 항목은 대상자가 성년 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,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"포함"을 선택할 수 있고, "8. 병역사항"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(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), 「주민등록법」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"포함"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8.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・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"용도 및 목적"칸을 작성하여야 하며,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9.「주민등록법」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 나 등・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
- 10.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·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(서명 포함)이 있어야 합니다.
- 11. 신청인이「출입국관리법」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칸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